

cas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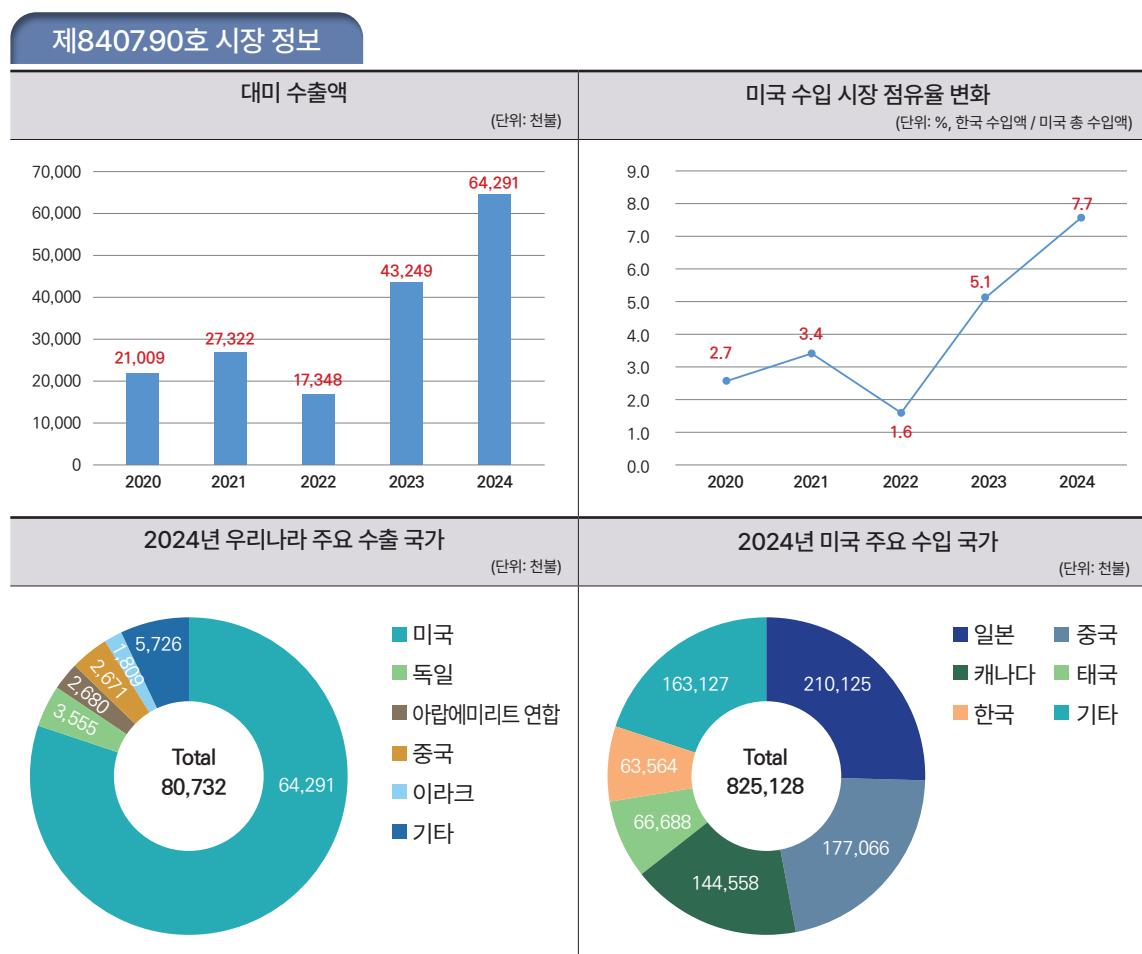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요약

사례명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432 (2021.03.24.)
사실관계	중국으로부터 엔진 생산을 위한 100개 이상의 모든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한 뒤, 이를 조립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엔진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이러한 부품들은 이미 여러 서브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도록 '사전에 정해진 용도(pre-determined end-use)'를 가지고 있음-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중국산 개별 부품들을 장착(mounting)하거나 용접(welding)하는 등의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지고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맞추어 끼우는 것(fitting together of parts and ... imported with a pre-determined end-use and ... ready for assembly)'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07.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432 (2021.03.24.)

사실관계

요청자 MTD Products, Inc. (대리인: Adrienne Braumiller, Braumiller Law Group PLLC)

제품명	•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gasoline-powered horizontal shaft engine)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랭크케이스, 크랭크샤프트, 캡샤프트, 실린더, 피스톤, 연료 시스템, 시동 시스템, 윤활 시스템, 배기 시스템, 스타터, 제어 장치 등 모든 구성품은 중국에서 전량 수입됨 (모두 중국산)
용도	• 제설기용 엔진
완제품 HTSUS	• 8407.90.90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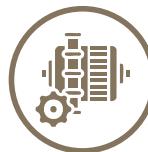
01

중국산 부품
멕시코로 수입



02

서브 어셈블리 조립



03

최종 엔진
조립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 중국산 부품 멕시코로 수입
- 멕시코 제조 공정 (100개 이상의 부품 개별 조립, 교정, 시험 공정 등 포함)
 - 개별 부품 세척
 - 여러 부품을 주요 서브 어셈블리로 조립 (ex. 크랭크케이스, 커버, 크랭크샤프트를 조립하여 크랭크케이스 어셈블리를 만들고 이를 다시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와 조립하여 블록 어셈블리 형성)
 - 최종 엔진 조립
-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과 포함되는 서브 어셈블리 제조 공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사례 약 절반에 해당하는 외국산 부품들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멕시코산 부품들과 함께 서브 어셈블리로 결합되고 이들을 플라스틱 펌프 부품들과 결합하여 원심형 와셔 펌프를 생산함. 이때, 멕시코 내에서 납땜, 용접, 기계가공, 플라스틱 사출 성형, 압착 등을 포함한 복잡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스테이터와 로터가 멕시코에서 제조됨

판정 멕시코 내 작업의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산임

- 반면, 조립 공정이 단순하거나 경미하고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진 부품을 그대로 결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사례 중국산 모터에 임펠러, 씰, 플라스틱 하우징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펌프 어셈블리 완성

판정 멕시코에서 행해진 조립은 단순히 부품들을 서로 압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순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 사례** 중국산 다섯 개의 서브 어셈블리와 기타 부품을 스웨덴에서 여객용 차량으로 조립
- 판정** 조립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개별 부품들의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사례** 중국에서 제조된 스테이터 또는 후면 하우징, 로터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 엔드캡 어셈블리를 멕시코에서 전동 모터로 조립
- 판정** 이들 부품은 이미 전동 모터 부품으로서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멕시코에서의 생산은 단순 조립 이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126155 (2010.10.29.)*

- 사례** 스웨덴산 부품을 독일로 수입하여, 해당 부품들에 대한 도색, 건조, 세척 등의 공정을 수행한 후 독일산 제품들과 조립하여, 선박의 프로펠러와 엔진 사이의 기계적 결합 역할을 담당하는 마린 스트레스 어셈블리 생산
- 판정** 스웨덴산 부품은 최종 어셈블리 내에서 기계적 결합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최종 제품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독일에서 수행된 공정은 제한된 작업에 불과하여 스웨덴산 부품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
-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이러한 부품들은 이미 여러 서브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도록 '사전에 정해진 용도(pre-determined end-use)'를 가지고 있음
 -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중국산 개별 부품들을 장착(mounting)하거나 용접(welding)하는 등의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지고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맞추어 끼우는 것(fitting together of parts and ... imported with a pre-determined end-use and ... ready for assembly)'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결론

- ✓ 최종 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III 시사점

- CBP는 조립 공정과 관련하여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이 되고, 조립이 단순히 끼워 맞추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2432 (2021.03.24.), <https://rulings.cbp.gov/ruling/H312432>
-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https://rulings.cbp.gov/ruling/H309984>
-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6>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21>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NY N126155 (2010.10.29.), <https://rulings.cbp.gov/ruling/N126155>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